#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70 발의연월일: 2024. 10. 11.

발 의 자:이인선·백종헌·김성원

최은석 · 엄태영 · 권영진

박성민 • 조지연 • 김 건

정동만 • 박정하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형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로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.

특히,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,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은 최대 1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나, '24년 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의 지난해 매출액은 3,653억 원에 불과하며, 구글이 국내에 납부한법인세 155억 원은 네이버 법인세 4,964억 원의 32분의 1에도 미치지않는 실정임.

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점유율 및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납부하는 법인세가 극히 낮은 상황을 타개할 제도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며, 현행 세법상 글로벌 빅테크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할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.

이에 대형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사업 구조 및 매출이 정확히 규명되어야 정확한 과세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,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규모 이상 외국법인의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(안 제94조의2제4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4조의2의 제목 "(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)"을 "(외국법인 등의 자료 제출)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 세계 매출 30조 원 이상인 경우로서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법인명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의 성명, 소재지 등 일반 현황
- 2.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 등 재무 현황
- 3.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, 거래 건수, 거래금액 등 서비스 제공 현황
- 4. 그 밖에 법인의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4조의2(외국법인연락사무소	제94조의2(외국법인 등의 자료
<u>자료 제출)</u> ① ~ ③ (생 략)	<u>제출)</u>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
	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 세계
	매출 30조 원 이상인 경우로서
	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
	익이 발생하는 외국법인은 다
	음 각 호에서 정하는 현황 자
	<u>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</u>
	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
	한다.
	1. 법인명, 사업자등록번호, 대
	표자의 성명, 소재지 등 일반
	현황
	2.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 등
	<u>재무 현황</u> 3.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
	<u> </u>
	등 서비스 제공 현황
	4. 그 밖에 법인의 사업 현황
	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사항